

2017년도 사업보고서의 기업회계 관련 유의사항

“사업보고서의 회계 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안내”

“사업보고서 중점심사사항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2017. 2. 27. ‘2017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전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며 기업의 내실 있고 충실한 재무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2017. 3. 7.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하며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에 확인토록 하여 사업보고서 작성의 충실화를 도모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점 심사사항’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2018년 회계 감독 및 감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기업회계 관련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투자자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 포함) 등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위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점 심사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2017년 사업보고서 공시 전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주요내용

1.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i)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과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의 일치 여부, (ii) 연결 및 별도 주석 전체를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직접 기재하였는지 여부

2.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i)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과 재고자산 관련 현황의 충실한 기재 여부, (ii) 수주산업 영위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별 정보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3.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i) 재무제표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ii)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4.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관한 사항

2018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인 (i) 개발비 인식·평가, (ii) 국외 매출 회계처리, (iii) 사업결합 회계처리, (iv)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5. 연결범위에 관한 사항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적시된 지배력의 요소와 그 세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문서화를 통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6. 종속·관계기업지분의 손상검토에 관한 사항

종속·관계기업 투지지분에 대한 손상징후 식별 및 손상검사 내역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및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 시 실적이나 시가 등 하락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가치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7. 핵심감사항목에 관한 사항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진행기준(투입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는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이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되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음

8. 우발부채에 관한 사항

우발부채는 채무인수·책임준공·자금보충 등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신용보강, Rating Trigger 조항(신용등급 조정 기준)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 계약 해제시 우발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 등 그 발생 유형이 다양하므로, 이를 간과하여 주식 공시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9. 새로운 기준서 준비와 관련된 사항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기준서인 (i) 제1109호 「금융상품」, (ii)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ii) 제1116호 「리스」와 관련하여 미적용 사실과 준비상황 및 도입 시 주요 재무영향 정보를 공시하였는지 여부

10. 사업보고서 제출연기 활용

감사인과 이견조율 등 필요한 경우 연 1회, 5일 이내 연기가 가능하며, 제출기한 7일 전 연장신고가 가능함

II. 2017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1. 재무공시사항

(i)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와 관련된 25개 항목(연결·별도재무제표 공시여부, 요약연결재무정보의 적절성, 대손충당금설정현황, 사업보고서와 주석에 중요계약 관련 사항 등)과 (ii)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관련공시내역의 적정성과 관련된 8개 항목(감사보수, 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정보수집 등), (iii)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7개 항목(연결실체 포함 여부, 지배기업 여부, 국내·해외·국내상장 종속기업수 등)이 있음

2. 비재무 공시사항

(i)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적정성과 관련된 3개 항목(최대주주의 개요, 임원 개인별 보수, 임원의 현황), (ii) 사회경제적 현안과 관련된 2개 항목(신종자본증권 사항,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상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현황), (iii) 서식개정과 관련된 2개 항목(보호예수 현황,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iv) 기재미흡 다수 발생사례와 관련된 1개 항목(합병 등 사후정보)이 있음

III. 최근의 감리동향

감독당국은 2014년 테마감리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매년 20개사를 선정·감리하여 평균 27.3%의 분식회계 적발율을 보이고 있고,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2017년에는 감리회사 수를 50개사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도 테마감리 이슈를 사전예고하는 등 감독당국의 테마감리는 향후 더욱 강화되고, 감리회사 수 역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V.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회계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감리 환경과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계감리 전문대응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회계감리 전문 대응팀은 다양한 기업회계 사건 관련 업무수행을 하였던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감독당국에서 수많은 기업회계사건을 처리한 실무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테마감리사건을 포함한 회계감리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황도윤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472

E-Mail. dyhwang@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의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